

국제	인권
인권	국제
인권	국제
인권	국제

“교문과 인권 탄압”

권력에 의해 저질려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중에서 교문만큼 가증스러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교문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방어수단도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정신에 까지 이르러 피고문자의 인격을 박탈하려 하기 때문이다. 균형잡힌 사회는 그것이 원시사회든 문명사회든 교문을 혐오한다. 반면에 권력이 예속적인 다수 대중의 희생 위에서 한정된 수의 사람들에 의해 시 독점되었거나, 또는 권력이 소수집단에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할 때 교문은 태러 정치의 불안에서 권력이 선호하는 무기가 된다.

1. 교문의 역사적 배경

18C의 시민혁명으로 “비인도적인 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는 인권의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확인되었고, 여러가지 인도적인 형사절차의 제정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 이후 20C 전반기에 전체주의 체제와 더불어 교문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합법적 제도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관습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알제리에서는 심리전을 책임지고 있는 프랑스 인대장 몇 명이 전체주의적 사고가 빙 교의를 치밀하게 만들어 낸다. 그들이 권하는 “특별수단”이라는 것도 무장반란에 대한 투쟁을 넘어선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찌즘과 스탈린이즘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수단, 다시 말해서 교문, 집단적 강제수용, 조직적 감금, 반란단체의 물력을 형성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제거등을 통한 반테러에 의해서 모든 주민을 “조건화” 하는 것이다.

그라이스와 브라질에서는 기술관료주의에 물든 군부가 저항운동을 제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특히 자유주의적 형태의 반대를 제거함으로써 대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문이라는 수단을 늘상 사용한다.

국가는 일종의 추상적인 신성위에 세워진 것으로서, 사람위에 놓이어서 그들을 초월하고 그들의 삶의 크고 작은 행동들을 결정하여 왔다.

2. 교문과 권력

◆ 권력은 교문을 명령한다.

국가를 떠친 테러는 희생자들의 물리적 제거에 만족하지 않는다. 권력은 그 이상을 바란다. 권력은 자백, 시인, 공범의 이름들을 포함하여 국가를 위협하는 거대한 국내적, 국제적 음모가 있다는 것을 믿게끔 할수있는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교문을 사용하라고 명령한다. 설득된 대중은 그들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상상력에 자신을 맡겨버린다. 그들은 자신의 일관성 위미를 강화하는 모든것을 믿을 텐데가 되어있다. 권력은 그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한다. 엄격히 말하자면, 교문은 어떤 개인의 저항을 꺾고 그로하여금 말을 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해 개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교문은 뚜렷한 목표--자백, 시인, 정보의 취득--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특별히 세디스틱한 몇몇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주도하에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교문은 일정한 규칙을 준수한다. 비록 그 규칙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공식문서에 조문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 교문이라는 악이 국가를 부폐시키고 있다.

교문은 항상 비밀리에 행해져왔다. 교문은 대개 닫혀있는, 어두운 지하의 장소에서 행해진다. 수감자를 쥐나 이, 빙대들이 들킬대는 지저분한 장소에 가두고 불순한 환경과 영양실조에 허득이게 하는 것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교문실은 보통 피고문자의 고통에 찬 고함소리가 들리지 않게금 지하실에 위치하거나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있다. 교문자들도 이런구석진 장소에서 작업하기를 좋아한다.

교문의 이러한 비밀스러운 측면은 교문이 권력에 봉사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서 잘 설명된다. 비밀스럽다는 것은 권력의 본질을 잘 반영해 준다. 모든 정부는 어둠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독재 정치 안에는 반대자를 억압하기 하여 교문을 사용하는 취향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 비밀의 집중이 있다. 독재권력은 일방적으로 조용하고 차가운 테러를 사용한다. 교문이 적법했던 구제도 (대혁명 이전의 프랑스) 하에서 조차 교문이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오늘날 테러의 수단으로서 교문을 하는 체제들도, 지붕위에 올라가 그 사실을 소리높여 외쳐대지는 않는다. 소련에 교문이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수십년이 걸렸다.

우리가 확인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C 후반기에 인간이 전역사를 통해 교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교문을 금지한 국제적 규범들

평시와 아울러 전시에도 인간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세계및 지역적인 언, 협약과 현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세계인권선언 (1948) 제 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66) 제7조, 유엔고문 기타 잔인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인간보호선언 (1975) 제3조, 유럽인권과 기본적 자유보호협정 (1950) 제5(2)조, 아프리카 인권 및 국민권 현장 (1981년에 체택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음) 제5조는 주로 고문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네바협정 (1949)은 공동2조, 제3차 제네바 협정 99조에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고문금지 규정은 절대적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는 [아무도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협약은 명시적으로 고문을 규탄하고 있는 국제법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법은 증가 일로에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66년에 체택되고 35개 회원국이 비준 또는 인정하여 1976년에 발효했다. 그 안에 명시된 인권규범의 넓은 범위만이 아니라 비준국들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사실에 이 조약의 의의가 있다.

4. 고문방지를 위한 길

고문은 근본적인 인권침해이고, 유엔총회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라고 규탄했으며, 국내법과 국제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위에서는 날마다 고문이 끈질지게 자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경험에 비추어 법률상의 금지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디에서 일어나든 고문과 그 밖의 잔인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과 대결하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고문방지 12개 항 행동요강]을 모든 정부가 실천에 옮기도록 호소하고, 이 행동계획을 추진하는데 관심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조치를 실천하는 것이 고문을 폐지하고, 전 세계의 고문 폐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이라 믿는다.

고문방지 12개 행동요강 중 8개

- 1) 정부의 고문 규탄: 모든 나라의 최고 당국자가 고문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든 사법공무원들에게 명백히 전달해야 한다.
- 3) 비밀감금, 폐지: 어떤 나라에서는 비밀장소에서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고문이 벌어진다. 정부는 구속자들이 국민에게 알려진 장소에 구금되고, 친척과 변호사에게 그들의 행방을 정확히 알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 5) 고문보고의 공정한 조사: 정부는 고문에 관한 일체의 진정과 보고를 공정하고도 효과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방법과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진정인과 증인들은 협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7) 법률에 관한 고문 금지: 정부는 고문행위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국제법의 정신에 따라서 전쟁상태 또는 다른 비상상태를 비롯한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 금지조항의 효력을 중지하지 말아야 한다.
- 8) 고문행위자들의 형사소추: 고문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고문행위자의 지위, 범행장소와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문행위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어야 한다.
- 9) 고문에 관한 교육: 구속자의 구금, 신문과 관리에 참가하는 모든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고문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상급자의 고문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 10) 보상과 회복: 고문피해자와 그 부양가족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의료나 건강회복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12) 국제적 규범의 비준: 모든 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개별적인 진정을 다루게 되는 선택의정서를 비롯하여 고문에 대한 안전장치와 구체적 방안을 담은 국제적인 법규를 비준해야 한다.

...아직도 고문을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고문추방을 부르짖는 사회는 부끄러운 사회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아직도 고문이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5천년 역사를 가졌다 하면서도 고문퇴치를 위한 피나는 국민적 투쟁이 여지껏 미흡했거나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의 이유입니다.

국제엠네스티의 고문폐지를 위한 12개 프로그램

등록일	분류기호
BII	2월 16

모든국가는 고문에 대한 금지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문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엠네스티는 모든국가에 대하여 고문근절을 위한 12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검고하고 있다.

1. 정부는 공식적으로 고문에 대한 분명한 비판의 입장을 모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문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

2. 정부는 모든 불법감금을 해서는 안된다. 모든국가에서 불법장소에서 고문이 행해지고 있기때문이다. 정부는 반드시 다음사항을 강조해야한다.

1) 공식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만 구금해야 하고

2) 구속자의 가족과 변호사가 그소재를 알도록 해야 한다.

3. 피의자에 대한 면회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면회가 금지된 상태에 있을때 대개의 경우 고문이 자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면회의 제한이 고문의 기회가 되지 않게 단속해야한다. 그리고 모든수인들은 체포된 즉시 사법관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 가족, 변호사, 의사등의 즉각적인 면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정부는 피의자의 구속과 심문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시 감독해야한다. 모든 피의자에게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당한 경우에 대하여 항의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고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감독기관은 심문할때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독자적으로 구치소등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5. 피의자 고문에 대한보도와 항의가 있을때 정부는 중립적인 사람들이 독자적인 공정한 조사를 할수있게 하고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6. 고문에 의한 자백이나 진술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정부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나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수 없게 해야 한다.

7. 정부는 고문을 가한자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문치사의 경우 무기형을 규정했다)

8. 고문을 한자는 고발을 당하고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디서나 고문을 행한자는 누구나 가해자 피해자 가릴것없이 항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

9. 법을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범인의 구속과 심문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고문이 금지된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문의 지시를 받을때 거부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을 교육을 통해 알게 해야 한다.

10. 고문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고문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과 합당한 치료와 회복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11. 고문에 대한 국제적인 상호책임

모든국가는 어떤나라가 고문을 했다는 고발이나 확률이 있을때 외교관계를 통하여 접촉하고 필요시에는 공개적으로 그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정부간에 법적으로 맺어있는 외교장치가 고문에 대한 조사나 방지하는 일에 이용되어야 한다.

정부간에 군사적 안정정책 . 경찰적 협조와 교육에 있어서 고문이 가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12. 국제 기구에 가입해야한다.

모든정부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적 기구에 가입 함과 함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동협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에 가입해야 한다.

(의정서는 특히 개인에게 항의권을 주고 있다)